

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2월 1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 
제5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12월 1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안전국장 박은실)

- 가. 제안이유
  - 공동체 생태계 확장 요구와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마을과 사회적 경제의 연대와 상생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조례 제명 변경
  - 기본계획 수립 사항 추가(안 제6조 제2항 제6호 및 제7호 신설)
  - 사업비 지원 대상 추가(안 제9조 제11호 신설)
  -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규정 추가(안 제10조의2 신설)
  -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(안 제14조 제2항 제5호 신설)
  - 마을공동체 위원 구성 직제순 개정(안 제15조 제4항)

- 마을공동체 위원 성별 균형 고려(안 제15조 제5항)
- 지원센터 설치 규정 개정(안 제22조 제1항)
- 지원센터 설치 규정 추가(안 제22조 제2항 신설)
- 지원센터 기능 추가(안 제23조 제8호 및 제9호 신설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- 마을과 사회적경제가 연대하여 공동체 생태계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, 그에 따른 통합센터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인력 배치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